

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6년 3월 2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1)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blacktriangleright \text{1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 [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blacktriangleright \text{2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2,5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text{Max}[\text{Min}(1\text{차 발행가액}, 2\text{차 발행가액}), \text{舊주주 청약개시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의 60\%}]$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6년 4월 20일

5.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60,000,000의 10%에 해당하는 6,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2) 구 주 주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4월 20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주식을 1주당 2.40051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 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 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수 10,000주 이하(액면가 2,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 주당 0.2 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6.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7. 주식 청약기간

- (1) 우리사주조합 : 2016년 6월 1일 (1일간)
- (2) 구주주 :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2일 (2일간)
- (3) 일반공모 : 2016년 6월 7일 ~ 2016년 6월 8일 (2일간)

8. 청약사무 취급처 :

- (1) 우리사주조합 : 대우증권(주)의 본·지점
-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우증권(주)의 본·지점
- (3)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대우증권(주)의 본·지점
- (4) 일반공모청약자 : 대우증권(주) 및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본·지점

9. 주금납입일 : 2016년 6월 10일

10. 주금납입처 : (주)신한은행 GS타워 대기업금융센터 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1월 1일

12.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 허용합니다.

-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6년 5월 17일 ~ 2016년 5월 23일(5영업일간)
-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 까지로 합니다.
-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대우증권(주)

13. 기타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sgcorp.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 (3)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등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